

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-311호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 (건설업의 폐업 등)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폐업사유	수리일
(주)미르이엠시 신○철 121111-0180265	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인천서구2022-가-05	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 후로121번길 15, 302호 (원당동)	사업포기	2026-09-17